

의 안 번 호	제3036호
의 결 연 월 일	2025. . . (제 회)

의 결 사 항	
---------	--

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·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5. 11. 14.

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·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036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11. 14.
제출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- 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나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이므로,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예산 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(현행) 부칙 제4조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→ (개정)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공기업법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해당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34983(2025. 9. 10.)호]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-51호

가) 예고기간: 2025. 9. 10.~2025. 10. 1.(21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·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·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2417호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·운영 조례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·운영 조례 부칙	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·운영 조례 부칙
<u>제4조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제7</u> <u>조에 따라 설치되는 상수도사업</u> <u>특별회계는 2023년 12월 31일까</u> <u>지 그 효력을 가진다.</u>	<u><삭 제></u>

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·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-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
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립

□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지방공기업법

제13조(특별회계)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.

□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·운영 조례

제7조(특별회계의 설치) ① 법 제13조에 따라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(이하 “상수도사업특별회계”라 한다.)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